#### 2 (제227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##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648

제출연월일: 2020. 7. 8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단서 규정 삭제(안 제3조제6항)
- 나.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 상 근거 없는 청사의 부지 조항 삭제(안 제46조)

### 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의2

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 별 영 향 평 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20928호, 2020. 5. 26.)

라. 입법예고: 2020. 5. 25. ~ 6. 15.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. 제4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	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	6
한다. <u>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</u>	<u>&lt;단서 삭제&gt;</u>
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	
⑦・⑧ (생 략)	⑦・⑧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청사의 부지) 청사의 부지는	<삭 제>
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	
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3배이상	
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	
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	
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.	

# 근거법규

#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- 제7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공유재산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  - 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사람
  -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6 (제227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#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공유재산심의 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 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 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# 3. 작성자

○ 소 속: 회계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이 름: 우윤미

○ 연락처: (052)290-3192